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350호
- 나. 발 의 자 : 이민옥 의원(찬성자 18명)
- 다. 발의일자 : 2023년 10월 16일
- 라. 회부일자 : 2023년 10월 23일

2. 제안이유

- 일자리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관리, 민·관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 마련,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자문 역할을 수행 중인 일자리 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일자리 위원회의 존속 기한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함(안 제9조의2)

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타 : 신·구조문 대조표 참조

5.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준석)

가. 개정안의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일자리위원회의 존속 기한(2023년 12월 31일)을 5년간
(2028년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근거 법령이 폐지된 조례의 조문 정비를
위해 발의되었음.

나. 일자리위원회 존속기한 연장 필요성

- 일자리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이하 “일자리
조례”)에 근거하여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일자리
사업의 지원,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 등에 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위원회의 구성은 ▶서울시의원, ▶서울시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경제·노동계·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총 31명 규모로 구성·운영되고 있음.(별첨차료1)
- 그리고 위원회에는 10명의 청년일자리 및 직업교육훈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2개의 실무위원회¹⁾를 두고 있으며, 제4기 위원회부터(2021년)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일자리위원회 전체 회의는 줄이고 일자리위원회 산하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 중임.

<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 개최실적 >

연도	회의개최일시		회의 안건
2021	일자리위원회	'21.3.30. (서면)	2021년 서울시 일자리정책 실행계획 보고 일자리정책 추진방향 및 전략 등 자문
		'21.12.29 (영상)	2021년 서울시 일자리사업 추진현황 보고
	실무위원회	'21.3.25.	기업·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인재양성 방안
		'21.3.30.	일자리 미스매칭 해소 및 취업지원서비스 강화 방안
2022	일자리위원회	'22.12.19	'22년 일자리사업 주요 성과 및 '23년 주요 일자리사업 계획 보고 및 의견수렴
	실무위원회	'22.04.13	市 청년일자리 사다리 정책 설명 및 2022년 하반기 신규 청년 일자리 정책 발굴
		'22.04.14	기술교육원 혁신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서울시 직업훈련 기관간 효율적 위계 정립 및 연계방안 논의 등
		'22.10.25	기술교육원 혁신과제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자립준비청년 특별패키지사업 추진계획 보고
		'22.10.28	서울시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2023	실무위원회	'23.6.28	2023년 서울시 주요 청년일자리정책 추진현황 점검 및 발전방향 모색
		'23.09.01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 추진현황 등 보고 및 논의

1) ▶ 청년일자리 실무위원회, ▶ 직업교육훈련 실무위원회

- 한편 「지방자치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²⁾에서 자문기관이나 위원회 설치 시 관련 조례에 존속 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일자리위원회는 2023년 12월 31일에 존속 기한이 만료될 예정임.
- 서울시가 2024년 경제정책실 예산의 38.6%를 차지하는 2,496억 3백 만원을 코로나19 이후 일자리 회복, 국제 경제환경 변화 대응, 4차 산업 혁명 대비 등 일자리 예산에 편성한 만큼 일자리위원회의 지속적인 역할과 필요성은 높아지는 추세라 하겠음.
- 또한 최근 3년간 일자리위원회에서 제시한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사업,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서울기술교육원 운영 관련 정책 제언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 관련 정책 자문이 필요한 사업이 산재 되어 있는 상황임.(별첨자료2)
- 이러한 일자리위원회는 서울시 일자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종합적 결과 도출까지 장시간 소요된다는 점에서 법적 존속기한 허용범위인 5년 연장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3(자문기관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을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자문기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 등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또는 규칙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다. 상위법령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

- 안 제18조제2항은 동 조문의 근거 법령으로 명시된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2016년)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창업 보육공간 지원, 정보제공, 교육, 컨설팅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2. 창업 자금 및 전시·판매장 등 마케팅 지원 3.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8조(일자리 지원시설)① 생략 ②삭제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은 2016년 국회에서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관련 법안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폐지되고 관련 조문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이관(2016.3.3.)된 바 있음.

< 국회 관련 법률안 발의 현황 >

제안일	세부사업명	대표발의
2013.12.10	지방중소기업 및 낙후지역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강창일 의원
2014.04.0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상규 의원
2014.09.0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 의원

- 또한 같은 법 시행령도 2016년도에 폐지됨에 따라 현재 존재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는 장기간 개정이 누락 되어 폐지된 상위법을 인용하고 있는바, 서울시는 상위법의 제·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에 있어 그 시기를 실기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한편 안 제18조제2항은 창업지원센터의 설치 근거에 관한 규정으로, 동 개정조례안에서 제18조제2항을 삭제하더라도 동 센터에 대한 근거는 2020년에 제정된 「서울특별시 창업지원 조례」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제2항의 삭제에 관해서는 별도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성찬	02-2180-8061

[별첨자료 1]

<일자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위원 현황>

○ 일자리위원회 : 총 31명 (위촉직 23명, 당연직 8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비고
1	노사 단체 대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	위촉직
2		장윤성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	
3		허범무	서울상공회의소 서울경제위원장 ※ 위원장	
4		김기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 의장	
5		김진익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서울지역본부장	
6		김철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정협의회 위원장	
7	민간 각계 대표	정희돈	(사)청년과미래 사무총장	
8		유재은	스페셜 스페이스 대표	
9		박유경	(사)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	
10		공 주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11		정미애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서울지역본부장	
12		석용찬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회장	
13		임병훈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회장	
14		조준희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회장	
15	일자리 노동 전문가	나영돈	한국고용정보원장	
16		이병권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17		김승택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	
18		정재호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장	
19		권대현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변호사	
20		최 균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21		여상태	한국폴리텍대학 서울강서캠퍼스 학장 ※ 부위원장	
22	시의회	이민옥	서울시의회 의원	
23		홍국표	서울시의회 의원	
24	당연직 임명직	오세훈	시장 ※ 위원장	당연직
25		김태균	경제정책실장	임명직
26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27		박재용	노동공정상생정책관	
28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	
29		이수연	복지정책실장	
30		한병용	주택정책실장	
31		하형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	

○ 실무위원회

구분	성명	현 소속/ 경력
청년 일자리	김주현	· 現)서울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 現)(주)에스와이오 경영지원본부 이사
	박환수	· 現)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사무국장 · 前)정보기술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변금선	· 現)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부연구위원 · 前)서울비전 2030위원회(2030분과) 위원
	안주현	· 現)(주)낭만상회 대표 · 前)케이잡스 연구원
	원태경	· 現)스프레틱스 대표
직업 교육훈련	김진하	· 現)서울연구원 연구위원 · 現)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이사
	남경아	· 現) 사단법인 씨즈 중장년사업본부 본부장
	박대희	· 現)한국폴리텍대학교 시각디자인과 교수(산학협력단장)
	박상우	· 現)한국산업인력공단 출제품질관리실 출제기획부장
	양현봉	· 現) 세종테크노파크 원장

일자리위원회(실무위원회) 자문내용 중 정책 반영 사례

2022.4.14. _청년일자리 분과

○ '청년취업사관학교 설립·운영' 관련

- 교육 프로그램 운영상에 있어서 능력있는 강사 확보가 중요한 과제이나 소프트웨어 교육분야는 강사 인력풀(pool)이 협소한 바, 향후 청년취업학교 조성 운영이 확대될 경우 양질의 강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 아울러,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바, 교육의 질 확보 및 사업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의 정체성 확보 및 특화방안 마련 등이 중요

⇒ 2023년부터 특화과정 운영 등 제안 반영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운영' 관련

- 참여기업의 다양한 교육과정 수요를 전체적으로 충족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교육 커리큘럼 설계는 교육기관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되, 서울시는 교육기관과 기업간 원활한 소통을 위한 역할 필요

⇒ 2023년 사업 추진 시 반영

2022.10.28._청년일자리 분과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기구·해외기업 등 청년들의 해외 일자리 취업연계 지원방안 검토 필요

⇒ 2023년부터 반영하여 시행

2023.6.28._청년일자리 분과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사업 관련

- '25년까지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으로 인프라가 대폭 확대될 예정인 바, 이에 따라 양질의 강의를 제공할 강사진의 확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SW분야 강사양성 프로그램' 개발·운영 검토 필요
- 또한, 청년취업사관학교 확대에 따른 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성과를 평가하여 청년층의 높은 호응도 유지·확보 필요

⇒ 2023년 반영, 12월에 개관하는 도봉캠퍼스 교육과정으로 반영함

2022.4.14._직업훈련분과

- 직업교육훈련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에게 기술교육원 교육과정이 잘 안내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함.

⇒ 2023년부터 통합홍보 시행

2023.9.1_직업훈련분과

- 기술교육원 운영 활성화, 중장년 전직특화교육과정 운영, 기업협력형 과정 운영 개선 등 '24년 기술교육원 운영계획 수립 시 정책제언 반영할 계획임.